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9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안철수 · 김소희
한지아 · 김기웅 · 서명옥
권영진 · 엄태영 · 안상훈
김은혜 · 이종욱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,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·지상·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‘도로’에 포함되지 않음.

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거주자·방문자·택배·배달·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교통공간으로, 공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,

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·무면허운전·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·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.

이에 도로의 범위에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른 ‘단지내도로’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·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

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·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어린이·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등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마목(중전의 라목) 중 “현실적으로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현실적으로”로, “있도록 공개된”을 “있는”으로 한다.

라.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“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”을 “통행로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도로”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그 밖에 <u>현실적으로</u>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<u>있도록</u>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</p> <p>2. ~ 3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「<u>교통안전법</u>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----- 「<u>공동주택관리법</u>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<u>현실적으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35. (현행과 같음)</p>